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2조(시험의 공고)에 따라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4일

울산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 일시

가. 시험일시 : 2021. 6. 5.(토) 10:00 ~

※응시자 입실완료 시간 : 09:20

나. 응시직렬별 시험시간

| 구분 | 직렬 | 과목수 | 문항수 | 시험시간 |
|----------|----------|-----|-------|-------------------|
| 공개 경쟁 | 교육행정 | 5과목 | 100문항 | 10:00~11:40(100분) |
| | 사서 | | | |
| | 전산 | | | |
| | 공업(일반기계) | | | |
| | 시설(일반토목) | | | |
| | 시설(건축) | | | |
| | 보건 | | | |
| | 식품위생 | | | |

※ 장애인 편의지원 시험시간 1.5배 연장 대상자 : 10:00~12:30(150분)

2. 시험 장소

※ 응시번호, 응시직렬에 따라 시험장소가 다르므로 반드시 응시표를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하시고, 해당 시험장에서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직렬 | 응시번호 | 시험장소 |
|-------|------------|-------------|--|
| 제1시험장 | 교육행정(일반) | 10001~10160 | 동평중학교 울산광역시 남구 도산로77번길 13-34 ☎ 052)272-7924 |
| | 교육행정(장애) | 15001~15015 | |
| | 교육행정(저소득) | 18001~18015 | |
| | 사서(사서) | 20001~20065 | |
| | 전산(전산) | 30001~30036 | |
| | 공업(일반기계) | 40001~40016 | |
| | 시설(일반토목) | 50001~50010 | |
| | 시설(건축) | 60001~60011 | |
| | 보건(보건) | 70001~70019 | |
| | 식품위생(식품위생) | 80001~80025 | |
| 제2시험장 | 교육행정(일반) | 10161~10560 | 학생중학교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426 ☎ 052)272-7480 |
| 제3시험장 | 교육행정(일반) | 10561~10959 | 울산서여자중학교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432 ☎ 052)267-3181 |

※ 응시직렬(류)별, 개인별 시험실 배정현황은 시험 당일 시험장 현관 및 시험실 출입문에 게시하오며, 시험 당일 응시표를 출력하여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서접수 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가 아니므로 반드시 응시표에 기재된 응시번호를 확인하여 타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 출력은 2021. 5. 24.(월) 10:00부터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edurecruit.use.go.kr>)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3. 응시자 준수사항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내사항]

가.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코로나19에 확진**되었거나 **자가격리중인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응시가 불가**합니다.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사전 신청**을 거쳐 **관할 보건소 등 방역당국과 협의 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시험장 준비, 시험문제 수송 등을 위해 사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응시 불가

- ▶ 사전 신청 기간 : 5. 26.(수) ~ 6. 4.(금) 18:00까지
 - ▶ 신청방법 : 전화 신청(총무과 인사팀 ☎052-210-5723, 5727) 후 서류 제출(이메일)
 - 이메일 주소 : useinsa@use.go.kr
 - 자가격리자 : 응시 신청서(서식1), 자가격리 통지서 사본(보건소 발급)
 - 확진자 : 응시 신청서(서식1),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는 주치의 소견서
- ※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방법 : 【별첨2】 참조
※ 자가격리자는 자차로 시험장소로 이동
※ 타지역에서 확진된 경우 시·도교육청 시험 여건에 따라 응시가 어려울 수 있음

나. 모든 응시자는 [별첨1] **코로나19 예방 응시자 유의사항**에 따라 안전한 시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및 발열검사, 시험실 환기** 등 시험 당일 진행되는 **안전대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모든 응시자는 **개인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개인별 마스크 지참)**하여야 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라. 시험장 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시험시간 중에도 착용하되, 시험 시작 후 시험감독관이 실시하는 **본인 확인 시에는 마스크를 잠깐 내리고 본인 여부 확인에 협조**해야 합니다.

마. 모든 응시자는 시험장 입실 전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하고, **체온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 **체온 측정 등으로 입실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미리 시험장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바. 시험장 내에서 **응시자 간 거리를 최소한 1.5m 이상 유지**하시고, **불필요한 대화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침·발열 등 의심 징후가 있는 응시자는 문진 후 **별도시험실에서 응시**하거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의심 징후가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응시**하는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격리대상자 응시 여부 확인을 위해 시험장 출입구에서 응시표 또는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 퇴실 시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리지 않도록 저층부터 순차적으로 퇴실할 예정 이오니 시험종료 후 감독관의 퇴실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차.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코로나19 의심 징후가 있으실 경우 울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팀(☎052-210-5723),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사항]

- 가.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08:00 이후 시험실 개방)
 - ※ 응시번호별로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나.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 다.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응시표(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온라인 채용 시스템(<http://edurecruit.use.go.kr> → 응시표 출력)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 공무원증, 학생증, 자격수첩,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용카드용으로 발급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라.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 섭취 등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종료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 마.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배부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당해 시험장은 응시자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출입이 통제되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고,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 위치, 교통편, 이동소요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

※ 부득이 자가 차량을 이용할 경우는 시험장 학교 또는 인근학교 주차장 이용

사. 타 수험생에게 방해되는 행위(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 불펜 똑딱 소리 등)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시험장 시설물 훼손 방지를 위하여 시험시행본부에서 준비한 **덧신(출입구 비치)을 반드시 착용하고 입실**하여야 하며, 장애인을 제외한 일반 응시생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아.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장의 시험실 내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며(시험실 내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해서는 안됨)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계산, 통신 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 시계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자. 시험시간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고,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 시작 전에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전원을 꺼서 소지품과 함께 시험실 밖으로 내 놓아야 합니다.(시험시간 중 몸에 소지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차.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한 시험과목 문제는 **공개(문제책 미회수)**하며,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출제**한 시험과목 문제는 **비공개(문제책 회수)**합니다.

| 출제기관 | 공개·회수 여부 | 출제과목 |
|----------------|--------------|---|
| 인사혁신처 | 문제 공개 미회수 |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기계일반, 기계설계,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시·도교육청 공동출제 | 문제 비공개 회수 | 공중보건, 보건행정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

[답안지 기재 및 표기] ⇨ [별첨5] 필기시험 답안지 견본 참조

가.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나. 문제책 표지 및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제1·2·3·4·5과목)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기의 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택과목이 있는 교육행정 및 사서 직렬의 경우에는 본인의 응시표에 인쇄된 선택과목 순서에 따라 제4과목과 제5과목의 답안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원서 접수 시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선택하여 답안을 표기하거나,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선택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험시작 후 문제책 표지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한 다음, 답안지 책형란의 빈칸에 기재하고 해당 책형(1개)에 “●”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라.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안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스티커, 수정테이프, 수정액 등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

※ 답안지에 수정스티커, 수정테이프, 수정액 등을 사용할 경우 해당 문항은 무효처리 합니다.

※ 답안지가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 마크(■■■■)를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마. 다음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결과는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되므로 기재된 내용대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안지는 OMR로만 판독하므로 모든 기재 및 표기 사항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며, 점수 산출은 OMR 판독 결과에 따릅니다. 또한 답안은 <보기>와 같이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정답표기 불인정 등)은 수험생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보기> 올바른 표기 : ● 잘못된 표기 : ① ② ③ ④ ⑤ ⑥

- 농도가 열은 컴퓨터용 사인펜 사용으로 답안 마킹이 흐리거나,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작게 점만 찍어 마킹할 경우 OMR 판독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지 않거나 연필 등에 의한 예비 마킹, 미세한 이중 표기, 손에 묻은 잉크가 답안지에 번진 경우 등에도 OMR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답안, 책형 및 인적사항 등 모든 기재(표기)사항 작성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완료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교체 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2021. 6. 4.(금)]까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온라인 채용시스템(<http://edurecruit.use.go.kr>)에 접속하여 가산점 정보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 【가산점 등록 변경 사항 안내】 | | | |
|---|----------|-------------------------|--------------------|
|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개정(2021.5.6.)에 따라 신규 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추가 및 명칭 변경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해당하는 응시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구 분 | 직 렬 | 변경사항 | 비 고 |
| 가산 자격증 명칭 변경 | 공업(일반기계) | 기계가공조립 산업기사 → 기계조립 산업기사 | 명칭 변경 전 자격증도 가산 가능 |
| | 보건 | 의무기록사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
| 가산 자격증 추가 | 시설(일반토목) | 방재 기사 신설 | |

- 취업지원대상자는 본인의 가산 비율을 사전에 등록된 보훈(지)청 보훈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필기시험 시행 전일[2021.6.4.(금)]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의사상자 등은 본인의 가산 비율을 사전에 등록된 보건복지부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 · 군 · 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필기시험 시행 전일 [2021.6.4.(금)]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정행위 등 금지

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제1항 제1호~제6호 위반행위

☞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제2항 제1호~제4호 위반행위

☞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다. 특히 아래사항 위반 시 해당시험을 무효로 처리할 예정이오니 OMR 답안지 작성 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종료후에 답안지를 작성 하거나,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책형 및 인적사항 등 모든 기재(표기)사항은 시험 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작성 완료

4. 기타사항

- 가.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use.go.kr>) 「시험/공고」란에 게시하며, 필기시험 성적 등 열람방법은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시 안내해 드립니다.
- 나.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대상자 현황을 [별첨4]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팀(☎052-210-5723, 572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1. 코로나19 예방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문 등 1부.
2.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 절차 안내 1부.
3. 필기시험장 위치 안내 1부.
4.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안내 1부.
5. 필기시험 답안지 견본 1부. 끝.

[별첨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당일 외부인의 시험장 출입을 전면통제합니다.

시험 진행에 대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응시자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시험장 조성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응시자 협조 사항

- 모든 응시자는 시험 당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입실하고, 퇴실 시까지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 다만, 본인 확인 시에는 마스크를 잠깐 내려 본인 여부 확인에 협조 바랍니다.
- 모든 응시자는 시험장 입실 전 체온 측정에 협조 바랍니다.
- 증상 확인 후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자는 별도시험실에서 응시하거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시험실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 위생 후 시험실에 입장하고 화장실에 다녀와서도 반드시 손위생을 실시해 주십시오.
- 응시자는 시험장 내에서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 손수건, 옷소매 등으로 가리는 등 에티켓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 개인이 사용한 휴지, 마스크 등은 시험장에 버리지 말고, 가방에 넣어 다시 가져 가시기 바랍니다.
- 시험 중 코로나19 주요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시험감독관에게 즉시 알려 주십시오.
- 다른 사람과 대화하지 말고 반드시 건강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주십시오.
-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모니터링 하여 증상 발생 시 울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052-210-5723,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개인위생 관리 철저히 준수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시 호흡기감염 의심환자 행동수칙

일반수칙

- 실내 시설, 밀집된 실외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기
- 꼭 필요한 경우(병원 방문 등) 외 외출을 자제하되 부득이한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 타인과 접촉 최소화 및 사람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가지 않기

가정 내 주의사항

-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가족 또는 동거인과 거리 두기(2m)를 지키기
* 특히 고위험군(영유아,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과 접촉 피하기
-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은 따로 사용하기
-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매일 청소·소독하기

의료기관 방문 시 주의사항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 발생 시 선별진료소, 호흡기전담클리닉,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검사받기
- 의료기관에 방문하려면 먼저 전화로 증상을 알리고 사전 예약하기
- 선별진료소, 호흡기전담클리닉 또는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가급적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복용자 주의사항

-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면서 발열 등의 임상증상 확인하기
- 항바이러스제 복용 후 열이 떨어지면, 24시간 동안 추가로 더 이상 증상이 없으면 등원, 등교, 출근하기
- 약제 복용 24시간 이후에도 발열, 호흡기 증상이 지속되면 검사의뢰서를 지참하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기

감염병 예방수칙(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6단계]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로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올바른 기침예절]



발행일 2019.11.5.

코로나19 사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

※

-19

9-5

□ 사례 정의

○ 확진환자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 19 (PCR) ,

○ 의사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코로나19 임상증상

(주요증상) 발열(37.5 ℃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폐렴 등

(기타증상)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

○ 조사대상 유증상자

-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시 (또는 별도 공지 기간),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 가능

□ 감염병의심자

○ 감염병의심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
 - ☞ 접촉자의 구분은 시·군·구 보건소 및 시·도 즉각대응팀이 역학 조사를 통해 확정함
 - ☞ 접촉자는 역학조사에서 확정된 자 외에 신고, 접촉자 모니터링 등을 통해 추가될 수 있음
-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 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묻고 답하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9-5판 기준

Q1. 코로나19의 증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코로나19의 가장 흔한 증상은 발열, 마른 기침, 피로이며 그 외에 후각 및 미각 소실, 근육통, 인후통, 콧물, 코막힘, 두통, 결막염, 설사, 피부 증상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증상은 보통 경미하고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염되어도 매우 약한 증상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환자들(약 80%)은 특별한 치료 없이 회복되나, 5명 중 1명 정도는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나 고혈압, 심폐질환, 당뇨병이나 암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출처) WHO, Q&A on coronaviruses

[참고.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 병원입원 시 주요증상]

(출처) 주간 건강과 질병 제13권 제28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임상정보 1차 분석 보고서

| 주요증상 | 비율(%) | 주요증상 | 비율(%) | 주요증상 | 비율(%) |
|----------------|-------|------|-------|-------|-------|
| 기침 | 41.8% | 근육통 | 16.5% | 설사 | 9.2% |
| 객담 | 28.9% | 인후염 | 15.7% | 구토/오심 | 4.3% |
| 발열 (≥37.5℃) | 21.1% | 호흡곤란 | 11.9% | 피로/권태 | 4.2% |
| 두통 | 17.2% | 콧물 | 11% | 증상없음 | 26.7% |

Q2. 코로나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인가요?

- 코로나바이러스는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그 중 사람에게 전파가능한 사람 코로나바이러스는 기존에 6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 이 중 4종은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며, 나머지 2종은 각각 MERS-CoV와 SARS-CoV로 알려져 있습니다.
- 이번 유행의 원인 바이러스는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로 공개된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박쥐유래 사스 유사 바이러스와 89.1%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Q3. 코로나19는 어떻게 전염되나요?

-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며 주로 환자와 직접 접촉 또는 호흡기를 통해 배출되는 비말에 의해 전염됩니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말을 하거나, 기침이나 재채기, 노래 등을 할 때 생성된 비말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호흡기에 직접 닿거나, 비말이 묻은 손 또는 물건 등을 만진 뒤 눈, 코 또는 입을 만질 때 전염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공기 감염은 흔하지 않으나 의료기관의 에어로졸 생성 시술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호흡기 비말을 만드는 환경 등 특수 상황에서 보통 비말이 도달하는 거리(2미터) 이상까지 바이러스 전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Q4. 누가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본 지침 상의 사례정의에 따라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증응급환자(중증도 등급기준 1 및 2 등급) 또는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중증도 등급기준 3등급)의 경우 응급 선별검사 또는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막연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므로, 의사선생님의 전문적인 판단을 신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의사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 조사대상 유증상자 |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C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적 검사 권고**(조사대상 유증상자 1로 신고)

- ① 가족(동거인)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 ②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 ③ 지역사회 유행 양상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
- ④ 응급선별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Q5. 코로나19는 치료제가 있나요?

- 대중 치료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아직까지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특이 치료제는 없습니다.
- 최근 FDA에서 “렘데시비르” 라는 약이 치료제로 긴급승인 되어 사용 중입니다.

Q6. 접촉자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 접촉자의 범위는 시·도 즉각대응팀이 노출정도를 평가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접촉자는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노출력(접촉 장소·접촉 기간 등) 등을 고려하여 증상 발생 2일전(무증상자의 경우 검체 채취일 기준 2일 전)부터 접촉자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 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개정 시 내용 변경 가능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 절차 안내

가. 확진자 시험 응시 절차

- ① **확진판정을 받는 즉시 울산광역시교육청에 연락**
 - 수험생이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 즉시 유선(☎052-210-5723~5727)으로 우리교육청에 확진사실을 알리고, 당사자 본인이 지자체 담당자(보건소 확진 통보 담당자)에게도 시험응시 사실을 알림
- ② **사전 지정된 시험응시 전담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 보건소 확진 통보 담당자와 지자체 병상 배정 담당자에게 사전 지정된 시험응시 전담시설로 배정해 달라고 요청
- ③ **별도시험장 응시 신청서(서식1,18쪽)와 해당 주치의로부터 응시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
 - 제출방법 : 이메일(useinsa@use.go.kr)로 제출
- ④ **시험 당일 우리교육청 시험감독관이 해당 시설로 방문하여 시험 진행**

나.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 절차

- ① **자가격리 통보를 받는 즉시 울산광역시교육청에 연락**
 - 수험생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유선(☎052-210-5723~5727)으로 우리교육청에 자가격리 사실을 알리고, 당사자 본인이 지자체 담당자(보건소 자가 격리 담당자)에게도 시험응시 사실을 알림
- ② **별도시험장 응시 신청서(서식1,18쪽)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한 자가격리통지서 사본 제출**
 - 제출방법 : 이메일(useinsa@use.go.kr)로 제출
- ③ **관할 보건소로부터 외출 허가를 받은 후, 별도 지정된 장소에서 시험 진행**
 - 시험응시를 위한 임시 외출 허가를 본인의 관할 보건소에 요청
 - 시험장은 별도 유선 안내 예정이며, 시험 당일 시험장까지 자차 등을 이용하여 개별 이동

-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
별도시험장 응시 신청서

- 신청구분 : 확진자 자가격리자
- 성 명 : _____
- 생년월일 : _____
- 응시번호 : _____
- 지원사항(직렬/직급) : _____
- 주 소
- 주민등록주소 : _____
- 현재거주주소 : _____
- 연 락 처
- 본 인 : _____
- 가족 등 : _____
- 기 타 : _____

※ 원활한 연락체계 구축을 위해 상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 기재(2개 이상)

본인은 위와 같이 별도시험장에서 시험에 응시하고자 합니다.

신청일자 2021. . .

신청인 _____ (서명)

붙임 : (확진자) 시험응시가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 1부.

(자가격리자) 자가격리자 통지서 사본 1부.

울산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시험응시를 위한 자가격리대상 수험생의 외출 시 주의사항

■ 시험에 참여하는 자가격리대상자 준수사항

- 자가격리 장소(집)에서 나가기 전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 이상)를 착용하며, 외출 전 과정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이동 시 반드시 개인차량으로 이동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가족차량으로 이동합니다.(대중교통 이용 금지)
 - 가족차량으로 이동 시 보호자는 운전자 1인만 동행해 주세요.
 - 자가격리대상자는 운전자의 뒷좌석 반대 방향(운전자와 대각선)으로 착석하여 운전자와 최대한 거리를 유지해 주세요.
 - 자동차 환기시스템은 외기 유입으로 설정하여 주시고, 이동 과정에서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차량 안 환기를 자주 시켜줍니다.
 - 식사가 필요한 경우 외출 전 개인식기류와 도시락·물을 준비해 주세요.
 - 이동 중 식당,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화장실은 고사장 내 별도로 마련된 자가격리자 전용 화장실을 이용해 주세요.
 - 고사장까지 이동 중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여 주시고, 대화 및 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 고사장 전과 후에 비치된 손 소독제로 손위생을 합니다.
 - 시험 종료 후 귀가 시 다른 장소에 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며, 바로 자가격리 장소로 돌아갑니다.
- ※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자가 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시험에 참여하는 자가격리대상자의 보호자(운전자) 준수사항

- 차량 탑승 전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가격리대상자와 이동 전 과정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보호자(운전자)는 이동 전 과정에서 자가격리대상자와 최대한 거리를 유지해 주시고, 자가격리대상자는 운전자의 뒷좌석 반대 방향(운전자의 대각선)으로 착석하도록 합니다.
- 자가격리대상자와 항상 거리를 유지하여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대화는 하지 않습니다.
- 차량 이용 전 창문을 열어 차량 내 환기를 충분히 하여 주시고, 이동 과정에서는 자동차 환기시스템을 외기 유입으로 설정하여 주세요.
 - 이동 과정 중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차량 안 환기를 자주 시켜줍니다.
- 자가격리대상자와 대면 전후에는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위생을 합니다.
- 식사가 필요할 경우 자가격리대상자와 별도로 분리하여 식사합니다.
- 시험 종료 후 귀가 시 다른 장소에 들리지 않고 자가격리대상자가 바로 자가격리 장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 자가격리대상자 탑승 후 차량의 손길이 닿는 곳의 표면(손잡이 등)은 소독하여 줍니다.
 - 시험장에서 하차 후 1회, 자가격리 장소(집)에 하차 후 1회, 최소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별첨3]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제1시험장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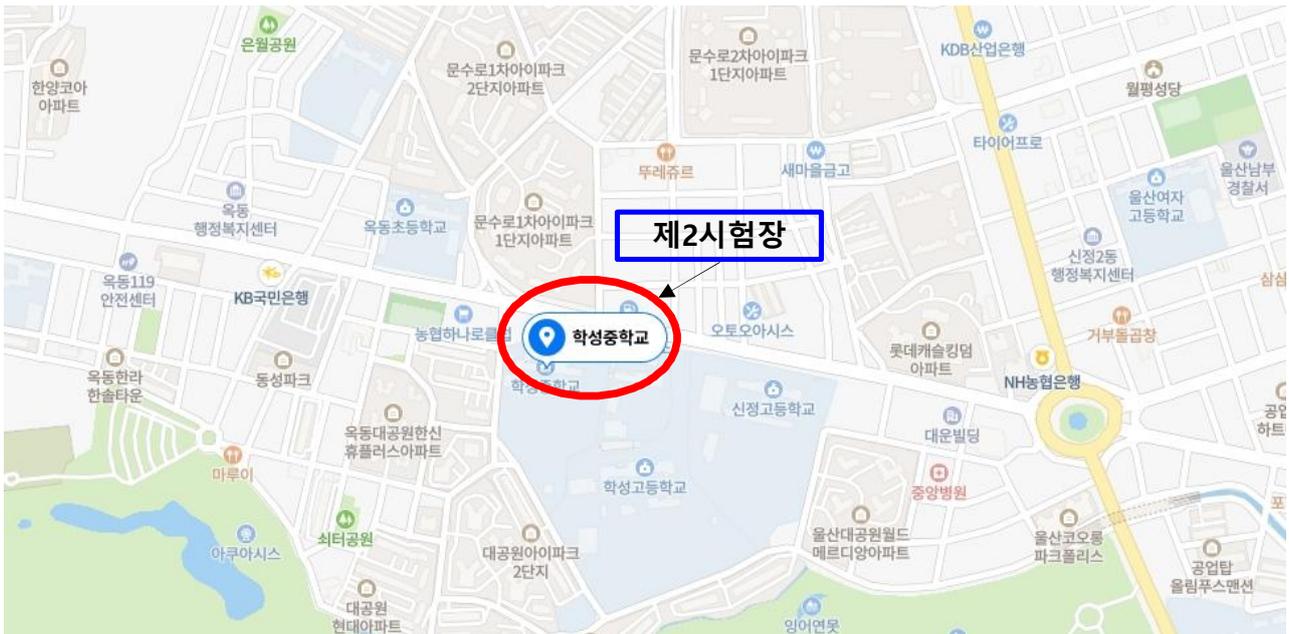
- 응시직렬 : 교육행정(일반) 10001~10160, 교육행정(장애) 15001~15015, 교육행정(저소득) 18001~18015, 사서, 전산, 공업(일반기계), 시설(일반토목), 시설(건축), 보건, 식품위생
- 제1시험장 : 동평중학교
-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도산로77번길 13-34(달동)
- 전화번호 : ☎ 052-272-7924(행정실)
- 본 위치 안내는 응시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정확한 위치는 응시자 본인이 시험시행일 전까지 사전에 직접 확인하여 시험당일 응시에 착오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시험실 입실완료 시간(09:20)을 감안하여 여유있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 ※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시험장에 오실 때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고, 부득이 자가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시험장 또는 인근학교(동평초등학교)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수험생 동승 차량의 경우 학교 정문 앞에서 정차 하지 마시고, 수험생은 차량소통이 한적한 인근지역에 하차하여 도보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제2시험장 안내

- 응시직렬 : **교육행정(일반) 10161~10560**
- 제2시험장 : **학성중학교**
-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426(신정동)
- 전화번호 : ☎ 052-272-7480(행정실)
- 본 위치 안내는 응시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정확한 위치는 응시자 본인이 시험시행일 전까지 사전에 직접
확인하여 시험당일 응시에 착오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시험실 입실완료 시간(09:20)**을 감안하여 여유있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 ※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시험장에 오실 때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고, 부득이 자가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시험장 인근학교(학성고등학교, 신정고등학교)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수험생 동승 차량의 경우 학교 정문 앞에서 정차 하지 마시고, **수험생은 차량소통이 한적한 인근지역에 하차하여 도보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제3시험장 안내

- 응시직렬 : **교육행정(일반) 10561~10959**
- 제3시험장 : **울산서여자중학교**
-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432(신정동)
- 전화번호 : ☎ 052-267-3181(행정실)
- 본 위치 안내는 응시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정확한 위치는 응시자 본인이 시험시행일 전까지 사전에 직접 확인하여 시험당일 응시에 착오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시험실 입실완료 시간(09:20)**을 감안하여 여유있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 ※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시험장에 오실 때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고, 부득이 자가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시험장 인근학교(학성고등학교, 신정고등학교) 주차장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 ※ 수험생 동승 차량의 경우 학교 정문 앞에서 정차 하지 마시고, **수험생은 차량소통이 한적한 인근지역에 하차하여 도보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4]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안내

대상자

| 시험장 | 응시번호 | 편의지원 제공내용 |
|------------------|-------|------------------------|
| 제1시험장 (동평중학교) | 15015 | 시험시간 1.5배 연장, 별도시험실 배정 |
| | 20065 | 시험중 화장실 사용, 별도시험실 배정 |
| | 30036 | 시험중 화장실 사용, 별도시험실 배정 |

응시요령

▶ **시험시간 1.5배 연장 대상 응시생**

- 시험시간 1.5배 연장 : 10:00 ~ 12:30(150분)
 - ※ 시작 시각은 동일, 종료 시각만 차이 있음
- 정규 시험시간(11:40) 종료 후부터 화장실 사용 및 재입실 가능
(단, 화장실 이용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
 - ※ 화장실 사용시에는 동성의 복도감독과 동행하여 화장실을 이용하고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소지품 검사 실시
 - ※ 정규시험시간 종료(11:40) 전에는 다른 응시자와 동일 하게 화장실 사용 제한
- 시험시간 연장 대상자라도 정규 시험시간이 종료(11:40) 이후 귀가 가능

▶ **화장실 사용 허용(임신부 신청자에 한함)**

- 화장실 사용이 허용된 임신부는 시험시간 중 제한 없이 화장실 사용 가능
(단, 화장실 이용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
 - ※ 화장실 사용시에는 동성의 복도감독과 동행하여 화장실을 이용하고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소지품 검사 실시

[별첨5]

20 년도 제 회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답안지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만 사용

| | |
|-----|--|
| 성 명 | |
| 한글 | |

| | | | | |
|---------|---|---|---|---|
| 응 시 번 호 | | | | |
| ① | ① | ① | ① | ① |
| ② | ② | ② | ② | ② |
| ③ | ③ | ③ | ③ | ③ |
| ④ | ④ | ④ | ④ | ④ |
| ⑤ | ⑤ | ⑤ | ⑤ | ⑤ |
| ⑥ | ⑥ | ⑥ | ⑥ | ⑥ |
| ⑦ | ⑦ | ⑦ | ⑦ | ⑦ |
| ⑧ | ⑧ | ⑧ | ⑧ | ⑧ |
| ⑨ | ⑨ | ⑨ | ⑨ | ⑨ |

| | | | |
|-----|-----|-----|-----|
| 책 형 | | | |
| 형 | | | |
| (A) | (B) | (C) | (D) |

| | | |
|-----|---|-------------------------|
| 결 시 | ○ | 결시지는 반드시 감독관이 좌측에 표시할 것 |
|-----|---|-------------------------|

| 문번 | 제1과목 | 문번 | 제2과목 | 문번 | 제3과목 | 문번 | 제4과목 | 문번 | 제5과목 |
|----|---------|----|---------|----|---------|----|---------|----|---------|
| 1 | ① ② ③ ④ | 1 | ① ② ③ ④ | 1 | ① ② ③ ④ | 1 | ① ② ③ ④ | 1 | ① ② ③ ④ |
| 2 | ① ② ③ ④ | 2 | ① ② ③ ④ | 2 | ① ② ③ ④ | 2 | ① ② ③ ④ | 2 | ① ② ③ ④ |
| 3 | ① ② ③ ④ | 3 | ① ② ③ ④ | 3 | ① ② ③ ④ | 3 | ① ② ③ ④ | 3 | ① ② ③ ④ |
| 4 | ① ② ③ ④ | 4 | ① ② ③ ④ | 4 | ① ② ③ ④ | 4 | ① ② ③ ④ | 4 | ① ② ③ ④ |
| 5 | ① ② ③ ④ | 5 | ① ② ③ ④ | 5 | ① ② ③ ④ | 5 | ① ② ③ ④ | 5 | ① ② ③ ④ |
| 6 | ① ② ③ ④ | 6 | ① ② ③ ④ | 6 | ① ② ③ ④ | 6 | ① ② ③ ④ | 6 | ① ② ③ ④ |
| 7 | ① ② ③ ④ | 7 | ① ② ③ ④ | 7 | ① ② ③ ④ | 7 | ① ② ③ ④ | 7 | ① ② ③ ④ |
| 8 | ① ② ③ ④ | 8 | ① ② ③ ④ | 8 | ① ② ③ ④ | 8 | ① ② ③ ④ | 8 | ① ② ③ ④ |
| 9 | ① ② ③ ④ | 9 | ① ② ③ ④ | 9 | ① ② ③ ④ | 9 | ① ② ③ ④ | 9 | ① ② ③ ④ |
| 10 | ① ② ③ ④ | 10 | ① ② ③ ④ | 10 | ① ② ③ ④ | 10 | ① ② ③ ④ | 10 | ① ② ③ ④ |
| 11 | ① ② ③ ④ | 11 | ① ② ③ ④ | 11 | ① ② ③ ④ | 11 | ① ② ③ ④ | 11 | ① ② ③ ④ |
| 12 | ① ② ③ ④ | 12 | ① ② ③ ④ | 12 | ① ② ③ ④ | 12 | ① ② ③ ④ | 12 | ① ② ③ ④ |
| 13 | ① ② ③ ④ | 13 | ① ② ③ ④ | 13 | ① ② ③ ④ | 13 | ① ② ③ ④ | 13 | ① ② ③ ④ |
| 14 | ① ② ③ ④ | 14 | ① ② ③ ④ | 14 | ① ② ③ ④ | 14 | ① ② ③ ④ | 14 | ① ② ③ ④ |
| 15 | ① ② ③ ④ | 15 | ① ② ③ ④ | 15 | ① ② ③ ④ | 15 | ① ② ③ ④ | 15 | ① ② ③ ④ |
| 16 | ① ② ③ ④ | 16 | ① ② ③ ④ | 16 | ① ② ③ ④ | 16 | ① ② ③ ④ | 16 | ① ② ③ ④ |
| 17 | ① ② ③ ④ | 17 | ① ② ③ ④ | 17 | ① ② ③ ④ | 17 | ① ② ③ ④ | 17 | ① ② ③ ④ |
| 18 | ① ② ③ ④ | 18 | ① ② ③ ④ | 18 | ① ② ③ ④ | 18 | ① ② ③ ④ | 18 | ① ② ③ ④ |
| 19 | ① ② ③ ④ | 19 | ① ② ③ ④ | 19 | ① ② ③ ④ | 19 | ① ② ③ ④ | 19 | ① ② ③ ④ |
| 20 | ① ② ③ ④ | 20 | ① ② ③ ④ | 20 | ① ② ③ ④ | 20 | ① ② ③ ④ | 20 | ① ② ③ ④ |

| | |
|--------------------------------|----------------------|
| ※ 시험감독관 기재란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 |
| 책 형 | 형 |
| 시 험 감독관 서 명 | 정자로 기재 (적색볼펜만 사용) |

[필적감정용 자필기재]
* 아래 예시문을 옮겨 적으시오

위 응시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함

기 재 란

답안지 작성요령 및 응시자 준수사항

※ 다음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결과는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되므로 기재된 내용대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답안지는 OMR로만 판독하므로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며, 점수산출은 OMR 판독결과에 따릅니다. 또한 답안은 <보기>와 같이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정답표기 불인정 등의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보기> 올바른 표기 : ● 잘못된 표기 : (V) ⊗ ⊙ ⊕ ⊖ ⊙
2. 특히,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지 않거나, 연필 등에 의한 예비마킹, 미세한 이중표기, 손에 묻은 잉크가 답안지에 번진 경우 등에도 점수 산출은 OMR 판독결과에 따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답안지를 받는 즉시 다음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답안지를 교체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표기)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표기)하여야 하며, 작성된 답안지는 1인1매만 유효합니다.
 - 가. 성명 : 본인의 성명을 정자로 기재
 - 나. 응시번호 : 위 칸에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고 아래칸에 “●” 로 표기
 - 다. 책형 : 시험 시작 즉시 문제책 표지의 책형을 책형란의 빈칸에 기재하고 그 아래쪽 해당란에 “●” 로 표기
 - 라. 결시, 시험감독관 기재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 마. 필적 감정용 자필 기재 : 예시문과 동일한 내용을 아래 빈칸에 기재
4. 답안지에 정답 이외의 표시를 하거나 답안지 기재 및 표기요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체 또는 당해 문항이 무효처리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책 편철이 표지의 과목순서와 맞는지 여부, 문제책 누락, 인쇄 상태 및 파손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책형을 답안지에 기재(표기)하여야 합니다.

6. 답안은 반드시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택과목이 있는 행정직군 응시자는 본인의 응시표에 인쇄된 선택과목 순서에 따라 제4과목과 제5과목의 답안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선택하여 답안을 표기하거나,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선택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안을 골라 그 숫자에 “●” 로 표기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할 경우 해당문항은 무효처리 됨)할 수 없습니다.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 (||||)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 부정행위 등 금지

※ 다음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그 시험의 정지, 무효, 합격취소,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1. 시험시작 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2. 시험시간 중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전자계산기,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통신·전자기기는 소지할 수 없습니다.
3.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체 할 수 없으며,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무효처분을 받게 됩니다.
 - 답안, 책형 및 인적사항 등 모든 기재(표기)사항 작성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완료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교체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답안 기재가 끝났더라도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사용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그 밖에 공고문의 응시자 준수사항이나 시험감독관의 정당한 지시 등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